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18-64호
2018. 8. 17.(금)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차 례

규 칙(8)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제안 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849호)1
- 대전광역시 대덕구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850호)6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851호)10
-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852호)1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853호) ...16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854호) ...24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855호) ...36
-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행위 조사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폐지규칙(규칙 제855호)108

고 시(1)

- 도로명주소 부여·변경 고시(고시 제2018-116호)110

공 고(2)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직권말소 예정사항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18-641호)111
-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문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18-642호)112

공 람									
--------	--	--	--	--	--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제안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8년 8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84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제안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제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제안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제안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를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과”를 “뜻은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을 “어느 하나”로, 같은 조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지방공무원직무보상조례”에 의하여”를 “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7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제안의 모집) 제안모집은 수시로 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10조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11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공무원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중 “대덕구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정조정위원회”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2장에 제1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 2(실무심사위원회) ① 접수된 제안의 채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내용의 소관부서에 실무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구성·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은 제안내용의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③ 실무심사위원회 위원은 제안내용 소관 부서의 담당주사 및 담당자로 하되, 필요시 관련 부서의 담당주사 및 담당자도 할 수 있으며,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④ 그 밖에 실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16조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에 따라”로 하고, “특별상·우수상 및 우량상”을 “금·은·동상”으로 한다.

제19조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상과 우수상”을 “제18조에 따라 금상과 은상”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특별상”을 “금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우수상 및 우량상”을 “은상 및 동상”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상: 하나의 공무원 창안당 7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 은상: 하나의 공무원 창안당 4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3. 동상: 하나의 공무원 창안당 1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제2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8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공무원의 제안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의견, 고안을 통해 채택된 우수제안에 대하여 수여되는 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안의 채택에 관한 실무심사위원회 조문을 신설 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무원 제안모집을 수시로 하되, 모집기간을 따로 정하여 모집할 수 있도록 조정함(제9조).
- 온라인 주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한 공무원제안 접수 시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함(제12조).
- 접수된 제안의 채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실무심사위원회 조문을 신설함(제13조의 2).
- 공무원 제안 활성화 도모를 위해 부상의 범위를 확대함(제21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함(제1조 부터 제28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모범공무원 포상운영규칙 일부개정규
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8년 8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850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모범공무원 포상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모범공무원 포상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모범공무원 포상운영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대전광역시대덕구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모범공무원”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추천함에”를 “추천하는 데”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를 “사람”으로, 단서 중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에 의한”을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중 “자가”를 “사람이”로, “결원시”를 “결원 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모범 공무원규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를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서”로, “지급 기간”을 “지급기간”으로, “다음달”을 “다음 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서식”을 “별지서식”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단서 중 “수당은 이를”을 “수당은”으로 한다.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 당 증 서

소속:

직:

성명:

위 사람은 20 년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이 증서를 수여함.

○ 지급액: 금 원(월 원)

○ 지급기간: 20 년 월부터 ~ 20 년 월까지(2년간)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 ○ (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로 발굴된 정비대상 중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함(제1조부터 제6조까지).
- 수당증서에 관한 서식을 현실에 맞게 수정함(별지서식).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8년 8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85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을 “「지방세징수법 시행
규칙」”으로 한다.

제4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징수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
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실장과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세무
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②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와 제18조에

따른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 및 기획감사실장이 통지하는 세출 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실·과장, 구의회 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0조제1항 중 “처”를 “처리”로 한다.

제77조제4항 중 “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한다.

제138조 중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을 “「계산증명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로 발굴된 자치법규 정비대상 중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권리·의무)사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방세 납세고지서 서식 준용 법규를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으로 수정함(제37조제1호).
-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제46조제2항).
- 통합지출관 제도 본격 시행에 따른 자금수급계획 수립 등에 관한 부서간 기능을 조정함(제47조).
- 금전채권 소멸시효 인용법규를 「지방재정법」으로 수정함(제77조제4항).
- 그 밖에 조문 오탈자 및 회계관계 서류 제출관련 제명을 수정함(제60조제1항 및 제138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8년 8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85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칙 일부개정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을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
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이 「지방회계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관련 법 조항을 현행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방회계법」이 제정됨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함(제1조).

-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에 대해 정한 인용 조문을 “「지방재정법」에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로 수정함(제7조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8년 8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853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제4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50인”을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50명”으로, “2인”을 “2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 제7호 서식)”으로,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1. 자원봉사활동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자원봉사자수첩 발급대장(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년 자원봉사 보험·공제료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단체 현황

단체명/대표자명					
단체등록사항		○ 등록부처(구·시·도) :		〈등록번호 : >	
		○ 등 록 일 :			
단 체 연락처	주 소	□□□-□□□			
	전화 및 휴대폰				
	F A X				
	e-mail				
	실무자	직 위		성 명	

2. 자원봉사보험(공제)가입 신청 현황

○ 위험분야 자원봉사자

연번	가입대상자			자원봉사실적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일시	자원봉사내용	시간	장소

○ 위험분야이외 자원봉사자

연번	가입대상자			자원봉사실적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일시	자원봉사내용	시간	장소

※ 첨부서류

1. 자원봉사실적 증빙서류 1부.
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귀하

직 인

년 자원봉사 보험·공제 가입인원 제출

1. 봉사단체 현황

단체명/대표자명					
연락처	주 소	□□□-□□□			
	전 화				
	F A X				
	e-mail				
	실무자	직 위		성 명	

2. 자원봉사보험(공제) 가입인원

- 위험분야 자원봉사자
 - 일회성 보험(공제)

연번	보험(공제)가입인원	전년도 실적	비 고
합계			
1		10회 이상	
2		9회	
3		8회	
4		7회	
5		6회	
6		5회	
7		4회	

- 연간 보험(공제)

연번	보험(공제)가입인원	전년도 실적	비고
합계			
1		10회 이상	
2		9회	
3		8회	
4		7회	
5		6회	
6		5회	
7		4회	

○ 위험분야이외 자원봉사자

- 일회성 보험(공제)

연번	보험(공제)가입인원	전년도 실적	비고
합계			
1		10회 이상	
2		9회	
3		8회	
4		7회	
5		6회	
6		5회	
7		4회	

- 연간 보험(공제)

연번	보험(공제)가입인원	전년도 실적	비고
합계			
1		10회 이상	
2		9회	
3		8회	
4		7회	
5		6회	
6		5회	
7		4회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로 발굴된 자치법규 정비대상 중에 상위법령 제·개정 미 반영된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을 준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제명으로 수정함(제3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제1조 부터 제12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8년 8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85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전광역시대덕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을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을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사용변경허가서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을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 중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조제1항에 따라”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조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간”을 “수탁기간”으로,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의 집 자료 열람 신청서

연 번	시 간	제 목	자료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대 출	반납

[별지 제4호서식]

문화관람실 사용허가서

1. 신청자 주소 :
2. 단 체 명 :
3. 성명(대표자) :
4. 행 사 명 :
5. 사용목적 :
6. 사용기간 또는 시간 :
7. 사용시설 내용

사용시설명	사 용 료	산출기초	비고

8. 사 용 료

계	문화관람실	부대설비	비고

9. 허가조건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문화관람실 사용변경허가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	
			생년월일	
허가사항	당초		변경	
사용목적				
사용시설명 또는 사용내용				
행 사 명				
사용기간				
사용시간				
참석 예정 인원				
허가조건				
<p>「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변경 허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p>				

문화의 집 수탁운영 신청서

시 설 명		위 치	
신 청 인	법 인 (단체명)		
	주 소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단체) 설립근거			
수탁운영조건			
<p>「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11조에 따라 문화의 집을 수탁 운영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p>			
대덕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단체) 현황 :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법인(단체) 정관 사본, 법인(단체) 기본재산 현황 및 수익사업 현황 2. 문화의 집 운영계획서 : 사업계획서, 운영인력 확보 계획, 세입·세출예산서 3. 운영비 부담 계획 4. 법인(단체)의 문화사업(최근 3년) 실적 등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로 발굴된 정비대상 중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조항을 수정 및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목적조항에서의 약칭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약칭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띄어쓰기 및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조문을 정비함(제1조).
-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수탁기간 연장에 대한 위임근거 조항을 삭제함(제14조제1항).
- 손해배상에 대한 민법 준용 조항은 불필요한 내용으로 해당 조문을 삭제함(제15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제2조부터 제18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8년 8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85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호내지 제5호”를 “제1호부터 제5호”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제4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6항의 규정”을 “제4조제6항”으로 한다.

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3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4조의 규정”을 “영 제44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 규정”을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24조 중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25조 중 “별지 제8호 서식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

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제26조 중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30조 중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른 채광물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32조 중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하고”를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로 하고,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제33조 중 “제44조의 규정”을 “제44조”로,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제50조의 규정”을 “제5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3조의 규정”을 “제53조”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단서의 규정”을 “단서”로,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으로,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으로,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은닉재산신고서

1.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종목)	면적 (수량)	현소유자(점유)		비고
				주소	성명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성명:

대전광역시대덕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행정재산용도폐지승인신청서

1. 재산의 표시

종 별	재산소재지	지목 및 구조	수량	단가	금액	비 고

2. 재산의 현황

종 별	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			현 용 도	관리상태	연고자 유 무
	년월일	목 적	취득당시가격			

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별지 제3호서식]

구 유 재 산 가 격 평 정 조 서

소재지	지번	지목 (종목)	수량	공 시 지 가		시 가 표준액	대장 가격	감정가격		매매실례		평정가격		비고
				개별	표준지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 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CODE NO :

회 계 명 : (토 지)

작성 자		확 인	
---------	--	--------	--

관리자 :	구	대분류		부 속 재 산	부 속 서 류	구 분		색 인
						등기부등본		
		중분류				토지대장등본		
		소분류				지적도등본		
소재지 :	분	세분류						

지 적	취득시 :	m ²	용도	연혁	현황및상태	유지관리비추가상황		
	현재 :					년도	내용	금액
토지 등급								
농지 등급								

인근지과세표준시가							수익상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년월일	지목	면적	거래 시가	임대 시가	시 가 표준액	조사가		취득년월일		년월일	
								취득원인		상대방	
								취득금액		변동사항	
								전소유자		관리청	
								등기년월일		가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액		감액		현재액		등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년월일	목적			

대부 및 사용 상황

년월일	임대주소	성명	대부내용	대부부적	계약년월일	대부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공유재산관리대장

CODE NO :

회 계 명 : (건 물)

작성 자		확 인	
---------	--	--------	--

관리자 :	구	대분류		부	속	부	구	분	색	인	
		중분류					속	등기부등본			
		소분류					재	건물관리대장등본			
		세분류					산	배치도			
소재지 :	분					류					

연 면 적	취득시 :	m ²	용 도	연 혁	현황및상태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현 재 :	m ²				년 도	내 용	금 액
건축년월일	년 월 일							
건축 가격	원							
구 조	구성재료							
	지급종류							
	층 수	연 면적						

임 대 상 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수익상황		비 고	
소 유 자		취득년월일		년 월 일					
수 량		취득원인		상 대 방					
임대연월일		취득금액		변동사항					
임대기간		전소유자		관 리 청					
		등기년월일		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 액		감 액		현재액		등 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년월일	목적			

대부 및 사용상황

년월일	임대주소	성 명	대부내용	대부목적	계약년월일	대부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공유재산관리대장

CODE NO :

회 계 명 : (공 작 물)

작성 자		확 인	
---------	--	--------	--

관리자 :	구	대분류		부 속 및 주 재 산	구	부	구 분		색 인		
		중분류					등 기 부 등 본	배 치 도			
		소분류								평 면 도	
		세분류									
소재지 :	분				서	류					

명 칭	구조형식	수량	용도	연혁	현황및상태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년도	내 용	금 액

임 대 상 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수익상황	비 고
소 유 자		취득년월일		년 월 일			
수 량		취득원인		상 대 방			
임대연월일		취득금액		변동사항			
임대기간		전소유자		관 리 청			
		등기년월일		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 액		감 액		현재액		등 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년월일	목적			

대부 및 사용상황

년월일	임대자주소	성 명	대부내용	대부목적	계약년월일	대부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공유재산관리대장

CODE NO :

회 계 명 : (기 계 기 구)

관리자		대분류		형		작성 자		확 인
소재지		중분류		규 격 용 량		용 도 연 락		
		제조연월일						
명칭		제조사		구입금액				
		제조번호						

이동 년월일	이동사유	증액		감액		현재액		비고	기재연월일	인 인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대조연월일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공유재산관리대장

CODE NO :

회 계 명 : (입 목 주)

관리자 :	구	대분류		주		부	구 분	색 인		
		중분류					속	등기부등본		
		소분류						서	배 치 도	
		세분류							평 면 도	
소재지 :	분	산	류							

수		종	용	도	연	혁	현	황	및	상	관	리	비	투	자	상	황
본 수		(분)															
		주															
식 재 상 황	년월일																
	본 수																
	면 적																
	식재자																

임대상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수익상황		비 고	
소 유 자		취득연일일		년 월 일					
수 량		취득원인		상 대 방					
임대년월일		전소유자		변동사항					
임대기간		등기년월일		관 리 청					
		등기번호		가 액					
		등기목적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 액		감 액		현재액		등 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액	수량	가액	수량	가액	년월일	목적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공유재산관리대장

CODE NO :

회 계 명 : (선 박)

작성 자		확 인	
---------	--	--------	--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	구 분	대분류	부 속 서 류	구 분	색 인	비 고
		중분류		등기부 등본		
		소분류				
		세분류				

주요설비및속구 명 칭	개 수	용 도	깊 이	m	항해구역	
		선적항	넓 이	m	최대탑승원 인	
		등 록 년 월 일	깊 이	m	착 수 연 월 일	
		등록번호	속 력		준 공 년 월 일	
		신호부자	주기외형		제 조 자	
		선체자료	정격출력		총 톤 수	

유지관리비투자상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비 고
년 도	내 용	금 액	취득년월일		년 월 일				
			취득원인		상 대 방				
			취득금액		변동사항				
			전소유자		관 리 청				
			등기년월일		가 액				
			등기 번호						
			등기 목적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 액		감 액		현재액		등 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년월일	목적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Code No

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

회계명 :

작성 자		확 인	
---------	--	--------	--

종 류						부 속 서 류				
재 산	소재지		지 목							
	면 적	m ²	가 액							
사 용 자	주 소					사 용 목 적				
	성 명		전 화 번 호							
사용기간	부터		갱 신 기 간							
사 용 료	유 상		무 상							
증 감 이 동 상 황 기타	년 월 일	적 요 (증감사유)	증		감		현 재		기 록	대 조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Code No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작성 자		확 인	
---------	--	--------	--

회 계 명 :

명 칭 :

재 산 관 리 관	종 목	등 록 번 호	취 득	년월일	방법	금액	소유자	부 속 서 류	연	혁					
증 감 이 동 상 황	년월일	문서 대호	증 감 사 유	증 가		감 소		현재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자 산 재 평 가	년월일	재 평 가 액	재 평 가 차 액	과 표 또는 평 가 액		평가자	기 록	대 조	비 고						
대 부 및 사 용 상 황	년월일	임 대 자 소	성 명	내 용	대 부 기 간	대 부 료	기 록	대 조	비 고						
비 고															

Code No

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

작성 자		확 인	
---------	--	--------	--

회 계 명 :

주식 등 종 류				법 인	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		총지분 금 액			주 소					
보관기관		재 산 관리관			사 업 내 용					
출 자 연 혁	년월일	금 액	변 동 사 유		자 본 금					
					설립년월일					
년 월 일	적 요 (증감 사유)	증		감		현 재		비고 (출자 재원등)	기 록	대 조
		수량	납입 금액	수량	납입 금액	수량	납입 금액			

Code No

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

작 성 자		확 인 인	
-------------	--	-------------	--

회 계 명 :

신탁종류		수 탁 자	법 인 명			
재 산 관 리 관			대 표 자			
신 탁 계약기간	부터 까지		주 소			
신 탁 계산시기			전화번호			
신 탁 의 목 적						
신탁기간	소 재 지	지 목	수 량	가 격	비 고	

2면

증 감 이 동 상 황	년월일	적 요 (증감사유)	증		감		현 재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기 타								

[별지 제5호서식]

구유재산 증·감 이동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명 성명 (인)

회 계 명 :

이동 년월일	코드 번호	재산 종류	구 분	재산소재지				지목 및 종목	용 도	구 조	전기		증		감		증감 사유	등기	
				시군	읍면동	리가	지번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구분	일자

(주) ·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임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 기타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6호서식]

구유재산가격 재평가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명 성명 (인)

재산종류	코드번호	구분	재산소재지				지목 및 종목	구조	수량	과표 또는 평가액	취득년도	경과년수	토지등급	재평가액		차액 (증감)	비고
			시군	읍면동	리	지번								단가	평가액		

- (주) · 재산종별: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임 차 재 산 대 장

소재지			시군		동읍면		리		번지					
임차물건	토지	지목			건물	종목			부속물	명칭	수량			
		지적	총면적	m ²		구조	전체	m ²						
			임차면적	m ²								건평	임차	m ²
소유자 주소·성명														
임차목적	계약년월일	임차기간		임차요금	요금지급									
					금액	지급년월일	적요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별지 제8호서식]

공유재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인)

[별지 제9호서식]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
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대덕구(이하 구)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
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
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
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
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
4조에 따라 사용인은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사용
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
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구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구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구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구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구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공 유 재 산 대 부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을 “갑”이라 하고, 대부 받은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제2조 대부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일간)

제3조 대부료 연액 원정.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한다.

제5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른 비용 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 “을”은 본 계약 기간 중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해당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을”은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부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 후 1년 이상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 기간 만료일까지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주자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을”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을”이 “갑”으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 제8조제2항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① 본 계약 기간 중에 “을”이 해제·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전에 대부 계약 해제·해지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갑”이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대부기간 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다시 대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대부기간 만료 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이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 “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임대자(갑)		대덕구청장	○○○ (인)
임차자(을)			(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1호서식]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① 이 계약은 “을”이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개량 및 임대 등의 부동산사업을 행하여 그 수익을 “갑”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탁기간의 연장은 년 이내로 한다.

제3조(신탁등기) “을”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4조(신탁부동산의 관리·이용) ① 갑은 신탁 토지를 “을”이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기타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임대료, 그 밖의 조건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을”은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기타의 임대조건 등 선정 결과에 대하여 “갑”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함에 있어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인근의 유사건물 임대료 및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을 참작하여 적절한 임대료와 임대조건을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을”은 제2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할 때에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임

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을”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인 영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 ⑤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시기 및 범위에서 수선·보존 또는 개량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의 수선 또는 개량의 경우에는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⑥ “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개량 등의 관리 사무를 “갑”과 협의하여 “을”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위탁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제6항에 따른 수탁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갑”과 협의한 후에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⑧ “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차입금 그 밖에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5조(선관주의의무) “을”은 신탁부동산의 관리·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7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제2호에 따른 반환채무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8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9조(수익권) ① “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 밖에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 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 수익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갑”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0조(신탁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따라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신탁계약의 종료 등)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 “을”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할 수 있으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2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유지관리비·개량비용 등과 그 밖에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3조(신탁보수) “을”은 신탁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영기간중의 신탁보수를 “갑”과 “을”이 별도의 약정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매년도 계산기일에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4조(수선비등의 적립) ① “을”은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따른 수익금에서 수선비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 15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을”은 보증금의 반환 및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대한 수익금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16조(자금의 차입) ① “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일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차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을”은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행한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7조(금전의 운용) ① “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신탁부동산의 임대료·보증금 등을 신탁사무처리비용의 지불 및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 18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8조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2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3조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신탁기간 중 매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 19조(손해배상) ① “갑”은 “을”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제10조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

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1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 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①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2호서식]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별지 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을”이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갑”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을”이 신탁기간 중에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때에는 그 시기를 종료시기로 한다.

제3조(일부종료)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처분가격 및 조건)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은 일금 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은 처분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처분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승계, 대금의 지불방법, 그 시기 및 그 밖에 처분에 관한 조건은 처분 시에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신탁등기) “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 ① “을”은 신탁기간동안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만을 보존하고 처분행위의 일체를 수행하되, 사용수익 및 유지관리 사무는 “갑”이 수행한다. 다만, 유지관리·운영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② “을”은 이 계약의 체결 후에 즉시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처분활동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처분활동을 행함에 있어 “갑”의 정당한 이익을 도모하고 신탁부동산이 조속히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선관주의의무) “을”은 신탁부동산과 관련한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9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1조(수익권) ① “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기타 이 계약에 따른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 “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취득한다.

④ “갑”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해지)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처분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
3. “갑”과 “을”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갑”의 처분의사의 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을”에게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을”은 해지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배상액과 신탁 사무처리에 소요된 모든 비용 및 “을”이 정하는 해지수수료를 “갑”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후에 해지한다.

제 13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목적의 달성 또는 중도에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 “을”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⑤ 신탁재산의 일부처분으로 인한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을”은 일부 종료된 부분에 수지 계산서를 첨부하여 신탁재산을 “갑”에게 교부한다.

제 14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 15조(신탁보수) 신탁보수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또는 보상금을 최종 수령한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에 따른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일부 종료된 부분의 대금을 수령한 때에 신탁보수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6조(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그 밖에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 및 “을”의 대지급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 17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을”은 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 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18조(자금의 차입) ① “을”은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차입 한도액은 차입 시에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③ “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 ④ “을”은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 및 저당권의 설정·시기 등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금전의 운용) ① “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차입금 등의 지출,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4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수지계산에 따라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을”은 신탁 기간 중에 신탁재산이 처분된 때에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대리인의 선임) ① “갑”은 “을”의 동의를 받아 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귀속되는 일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임할 수 있다.

- ② “을”이 대리인에게 신탁의 원본, 신탁수익 및 기타의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한 때에는 이를 “갑”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손해배상) ① “갑”은 “을”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을”은 “갑”이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4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①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3호서식]

임대형토지 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을”이 별지목록 1의 토지 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임대·관리·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기간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조에 따른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후에는 지체 없이 임대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등기) ① “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을”은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의 건축) ① “을”은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 “을”은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을”은 제1항에 따른 건설회사와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그 밖에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을”은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불방법, 공기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 신탁 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그 밖의 조건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을”은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및 그 밖에 임대조건 등의 설정결과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2항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 유사건물의 임대료,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 등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 및 임대 조건의 설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을”을 제2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하되,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되며,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인 영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 사무를 “갑”과 협의하여 “을”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제6항에 따른 관리사무수임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차입금 및 그 밖에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선관주의의무) “을”은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차입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반환채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수익권) ① “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 밖에 이 계약에 따른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 “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갑”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에 따른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③ “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을”은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 “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신탁부동산의 임대료·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3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4조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신탁기간 중에 매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 “갑”은 “을”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제11조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첨부] 1. 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2.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①인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4호서식]

분양형토지신탁 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을”이 별지목록 1의 토지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처분·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조에 따른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전·후에는 지체 없이 분양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등기) ① “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을”은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건물의 건축)** ① “을”은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 ② “을”은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을”은 제1항에 따른 건설회사와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④ “을”은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그 밖에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을”은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불방법, 공기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 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운용)** ①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할 수 있다.
- ② 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일부를 주차장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그 밖의 조건에 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 사무를 “을”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⑤ “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제4항에 따른 관리사무수임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
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차입금 및 그 밖에 채무의 담
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선관주의의무) “을”은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
·관리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
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
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차입금의 채무 및 제2호와 관련한 상환채무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수익권) ① “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
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
한다.

③ “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
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갑”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

여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에 따른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을”은 “갑”이 “을”에게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2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 “을”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4조(신탁보수) “을”은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기간중과 준공 후에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영기간중의 신탁보수는 “갑”과 “을”이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연도 계산 기일에 기성고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협약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신탁기간 중에 매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 “갑”은 “을”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협약)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약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약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첨부] 1. 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2.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수 탁 자 (을)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성 명:		①
사업자등록번호:		

[별지 제15호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년도 관리계획 총괄표(5-1)

회계명 :

(단위 : m²,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 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 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5-2)

회계명 :

(단위 : m²,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 주) (1) 매입과 그 밖에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그 밖에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따른 취득을 말한다.
 (4) 그 밖에 작성요령은 “양식 5-4”를 참조

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5-3)

회계명 :

(단위 : m², 천원)

일련번호	재산표시				교환대 상수량	추 정 가 액	교 환 시 기	교 환 사 유	교 환 대상자	비 고
	구분	지목	소재지	일단의 수 량						
1건	처 분 취 득									
계	토 지	처 분 취 득								
	건 물	처 분 취 득								
	기 타	처 분 취 득								

주) (1) 구분: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m²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m²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그 밖에 작성요령은 “양식 5-4”를 참조

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5-4)

회계명 : _____

(단위 : m²,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매각대 상수량	과표또는 평가액	매각 시기	매각 사유	매수희망자 주소 · 성명	비고
	지목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계	토지								
	건물								
	기타								

-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 (2) 일단의 수량: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 (3) 매각대상수량: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 (4) 과표 또는 평가액: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 (5) 매각시기: 매각예정시기를 반기별로 기재한다.
- (6) 매각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 (5-5)

회계명 : _____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양여대상 수량	과 표 또는 평가액	양여 시기	양여사유 및 근거법령	양수자	비고
	지목	소재지	일단의 수량						
계	토지 건물 기타								

주) (1) 양여대상수량: “양식 5-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 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공 유 재 산 매 매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 ① “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 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회수	분납금	이 자	납부기일	회수	분납금	이 자	납부기일

② “을”은 제1항의 대금납부기간 중 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 할 푼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 공작물 그 밖에 시설인 때에는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재산매각 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 ①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일시납의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을”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 “갑”은 계약에 따라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및 그 밖에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 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았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갑”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2조에 따른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하여 구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

②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 제8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기납된 대금에서 매매 계약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 “을”은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제11조 “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2분의 1이상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비용은 일체 “을”이 부담한다.

제12조 “갑”은 구획정리에 따른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하등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이에 대한 이의를 “갑”에게 제의치 아니하기로 한다.

제13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을”이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본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 당사자는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매도자(갑)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인)

위 매수자(을)

주소:

성명: (인)

[별지 제18호서식]

공 유 재 산 매 수 요 구 서

주 소

성 명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인)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재산소재지	지번	재산종별	총수량	대부수량	평가액	비고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구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개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구청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21호서식]

구유재산 대부 및 사용정리부

소재지		시		동읍면		가		리		번지		
물건표시	토지	코드번호	건물		번호	기		명칭	부속사항			
		지목			종목			구조				
		면적			전체			면적			전체	형태
					대부사용			대부·사용			대부·사용	수량
적요												
허가번호	사용목적	계약(갱신) 년월일 허가	기간	대부 사용료	대부·사용료징수		사용자					
					금액	징수 년월일	주소	성명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별지 제22호서식]

채광물 가격평가조서

소재지	지번	채광물 종류	석재 종류	용도	규격	수량 (A)	매매실례도는사정가격(㎡)			평가가격		비고
							매매 실례	사정정통기관		㎡당 단가 (B)	금액 (A×B)	
								○○단체	○○조합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

- (주) 1. 채광물의 종류: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별지 제23호서식]

(앞면)

변상금사전통지서						
대상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⑤ 부과내용						
재 산 의 표 시			점유면적 (㎡)	부과기간	변상금 [예상] (원)	비 고
소 재 지	지 목	지 적(㎡)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불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 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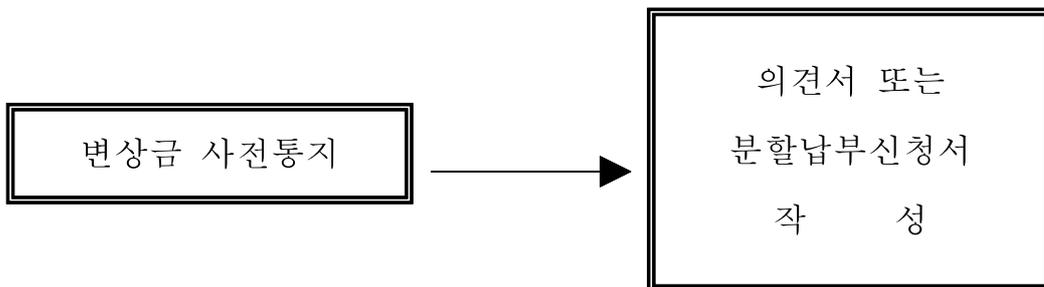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 덕 구 청 장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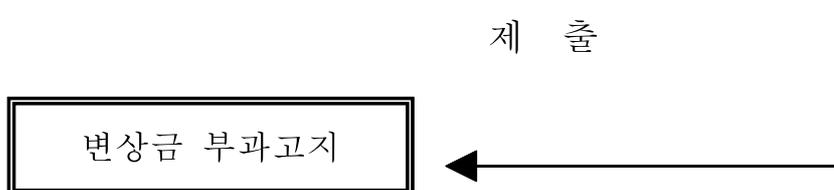
※ 변상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처 리 기 관	점유·사용자
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	

발 송



제 출



[별지 제24호서식]

변 상 금 사 전 통 지 에 대 한 의 견 서

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항 목	통 지 내 용	의 견

<그 밖의 의견>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5호서식]

청 사 신 축 계 획 서

- 작성자:
- 확인자:

1. 구 청사현황

① 위 치	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				
② 여 건	인 구 수	직원수	수 용 기 관		
	명	(정규)명			
③ 대 지	지 목	면 적	소유구분	취득년월일	현재가액
④ 건 물	구 분	본 건물	부속건물		
	면 적				
	구 조				
	건축년도 (내용년한)				
	소유구분				
	현재평가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2. 신축계획

① 위 치	신축사유:										
② 규모	대지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건물	계	본 관			부 속 건 물					
		㎡	㎡	㎡	㎡	㎡	㎡	㎡	㎡	㎡	
③ 총사업비	계	본 관			부속건물			부대시설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④ 재원계획	계	교부세		시 비		구 비		청사매각대금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⑤ 주요자재	계	목 재	샷 시	창호재	바닥재	치장및마감재		내부재			
⑥ 신축비	계	건축공사비		냉난방시설비		전기공사비		부대시설비		설계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3. 추진계획(상황)

제 목	추진 일정	추진 상황
1. 부지 확보 ○ 매 입 ○ 정 지 2. 건물신축 ○ 설 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착 공 ○ 내부시설 ○ 준 공		

건물전경		평면도	

[별지 제26호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위 치		취득일자	조 층
면 적	대 지	구 조	
	건 물		
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	허 가 일 자	취 소 일 자	비 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로 발굴된 자치법규 정비대상 중에 상위법령 제·개정 미 반영된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을 준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부채납과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인용 조문을 수정함(제11조제1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규정된 일 반재산의 매각 또는 교환시 가격평정조서 작성 관련 내용이 시행규칙에 중복되어 있어 삭제함(제16조제2항).
-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은 당연히 따라야 할 상위법령으로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함(제35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제1 조부터 제34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행위 조사
및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8년 8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856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행위 조사 및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폐지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행위 조사 및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1. 폐지이유

「지방자치법」 및 행정안전부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18. 5. 18.)과 관련, 상위법인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위임 없이 본 규칙이 제정되었으며,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리하면 되므로, 필요성 및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행위 조사 및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을 폐지함.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소	도 로 명 주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 고
오정동 478-10	한남로113번길 41	2018 8 17.	건물신축	한남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1,1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삼정동 산17-1	대청호수로 1862	2018 8 17.	신규부여	대청호수의 명칭을 반영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민원지적과(☎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직권말소 예정사항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7 제7항(영업허가 등)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자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 목: 일반음식점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예정일자: 2018. 08. 30.
3. 처분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및 제37조 제7항
4. 직권말소처분 사항 공시송달 내역

업종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사업자등록폐업 일자
일반 음식점	1닭하라옛날통닭	대덕구 한밭대로1033번길 15, 상가동 105호(오정동, 신동아 (아))	김용우	2017.10.05.폐업

-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5. 공고기간: 2018. 08. 17. ~ 2018. 08. 29.

6. 고지사항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견제출) 규정에 따라 2018년 08월 29일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청소위생과 위생안전담당 ☎(042)608-6901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문 공시송달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에서 시행하는 “용호천 무명1교 재가설공사” 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신청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신청서 공고 및 열람 요청이 있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사업개요

- 가) 사업의 명칭 : 용호천 무명1교 재가설공사
- 나) 사업 시행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다) 시행자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 라) 사업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용호동 34번지 일원
- 마) 사업의 내용 : 교량 재가설 L=34m, B=8.0m
- 바) 수용할 토지 등의 내역 :

수용토지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변경전)	지목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주소
		공부	실제					
용호동	48-16 (48-4)	답	답	6	강의식	대덕구 용호동 50	-	-

※ 수용재결신청서는 방문 공개

2.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및 의견서 제출

- 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8. 8. 17. ~ 2018. 9. 3.(14일 이상)
- 나) 열람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건설과(대덕구청 별관 3층)
- 다) 열람사항 :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 라) 의견제출 : 열람기한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
- 마) 제출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건설과(☎042-608-5253)

3. 기 타

- 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에서 시행하는 「용호천 무명1교 재가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수용재결신청서가 대전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되었음을 알려드리며,
-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는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건설과(☎042-608-52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서(서식) 1부. 끝.

의 견 서

1. 제	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8. . . .</p> <p style="text-align: center;">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p>		
<p>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 귀하</p>		
비 고	<p>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p> <p>2.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p>	